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보험(달러형)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ELS 의 정석 변액보험(달러형)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9년 5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①)ELS의 정석 ②)변액보험③)(달러형)④)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②), ③) 및 ④)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만15세~80세	일시납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금액은 USD 5,000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 총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포함

(2)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후, '(1)'에 따라 한도를 계산할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공제액(14.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월대체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차감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나.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연단위복리(연미만단리)로 부리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가'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제외,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한다.
- 라. '다'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이체는 '17.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② 펀드로 한다.
- 마.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된 월대체공제액에 대한 연체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제한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직후 계약자적립금이 일시납보험료의 20% 이상 되어야 하며 이를 최소잔여적립금이라 한다.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일부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합계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하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펀드별 적립금 비율에 따라 인출한다.

라. '가' 및 '다'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 할 수 없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중 회사가 정한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13. 납입보험료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보험료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	승낙일	

(2)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납입일 + 제2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기본보험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14.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월대체공제액은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해당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5. 계약자적립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6.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약관 제25조(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약관 제26조(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10.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거나 '21. 기타'의 '다'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17.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라.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및 '19.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당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또는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감액) 발생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7.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이하 상기 네 가지를 합한 보수를 '특별계정운영보수'라 한다)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영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영보수를 적용한다.

나. 펀드의 유형

(1) 펀드의 유형은 다음으로 한다.

- ① 주가지수달러ELS거치형(이하 '달러ELS형 펀드'라 한다): 개별 호수(예: 거치형 제1호, 거치형 제2호...)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되며, 개별 호수별로 파생결합증권[KOSPI200, S&P500, HSI, HSCEI, DAX, FTSE100, NIKKEI225, EUROSTOXX50 등 주가지수에 주로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에 순자산(NAV)의 50% 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 및 채권형 펀드에는 50% 이하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주식시장 하락 등으로 인한 펀드의 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을 헷지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순투자비율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5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다만, 달러ELS형 펀드 각 호수 별 설정일 또는 투자한 파생결합증권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이거나, 투자금액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MMF 포함), 채권 등에 순자산(NAV)의 50%이상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달러단기채권형: 국제 신용등급 기준 투자등급 이상인 달러 채권(채권형 ETF 및 수익증권 포함)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한다.

(2) '(1)'의 달러ELS형 펀드는 투자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초자산인 KOSPI200, S&P500, HSI, HSCEI,

DAX, FTSE100, NIKKEI225, EUROSTOXX50 등의 지수를 매 주기 상환평가일 마다 관찰하여 조기상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조기상환 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만기 시 상환된다. 이때, 만기 시 기초자산 관찰결과가 투자 시 정해진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달러ELS형 펀드가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 되는 경우, 당해 펀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다시 투자하며, 상환 후 재투자되기 전까지 유동성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재투자하는 경우 새로이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투자조건은 이미 상환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조건과 다를 수 있다. 또한,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된 이후 재투자가 실행되기 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자가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달러단기채권형 펀드로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 (3) 회사는 달러ELS형 펀드 각 호수 별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의 구조,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주요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 (4)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1)’의 달러ELS형 펀드에 투자한 계약자 중 일부 계약자의 파생결합증권 조기(만기)상환 전 중도 환매로 인한 손익이 잔여 계약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
- (6) ‘(1)’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7)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투입비율 선택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에서 규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펀드가 2개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5%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된다. 다만, 달러ELS형 펀드로의 추가납입은 해당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되어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가 실행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달러단기채권형 펀드로 전액 투입된다.
- (3)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되며, 별도의 선택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투입된다.

라.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나’의 달러단기채권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자동 변경한다.
 - ① 계약일 이후 3년이상 경과된 계약
 - ②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계약
- (2) 목표수익률
 - ① 목표수익률의 선택: 계약자는 120%, 130%, 140% 중 하나의 목표수익률을 선택해야 한다.
 - ② 목표수익률의 계산

$$\text{목표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금}}{\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 (3) ‘(1)’ 및 ‘(2)’에 따라 자동변경되는 계약은 「목표수익률 달성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달러단기채권형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며, 자동변경된 이후 납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달러단기채권형 펀드로 전액 투입된다.
- (4) 달러단기채권형 펀드로 자동변경 된 이후 계약자는 ‘다’ 및 ‘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 투입비율 및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 (5) 회사는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연간 계약자적립금 이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6)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선택한 목표수익률 도달 전에는 목표수익률의 변경, 신청취소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 (7) 회사는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한다.

마. 계약자의 계약자적립금 이전

-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펀드로의 이전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2) 달러ELS형 펀드로의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은 달러ELS형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되어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가 실행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3) 회사는 '(1)' 및 '(2)'에 따라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4)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 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바.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 (1) 펀드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 운용보수
주가지수달러 ELS 거치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600%(매일 0.001643836%)
달러단기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00%(매일 0.000273973%)

- (2) 펀드종류별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주가지수달러 ELS 거치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300%(매일 0.000821918%)
달러단기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100%(매일 0.000273973%)

- (3) 펀드종류별 특별계정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 수탁보수
주가지수달러 ELS 거치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5%(매일 0.000041096%)
달러단기채권형	

- (4) 펀드종류별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주가지수달러 ELS 거치형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17%(매일 0.000046575%)
달러단기채권형	

- (5)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1)' 내지 '(4)'에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사.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2)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아.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USD 0.01(1 cent)를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USD 1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USD 1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USD 10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달러ELS형 펀드의 기준가격은 개별 호수(예: 거치형 제1호, 거치형 제2호, ...)별로 각각 별도로 산출한다.

- (3)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한다.

- ①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②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대량의 해지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에 따른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①’ 및 ‘②’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차.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카.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타.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④ 기타 ‘①’ 내지 ‘③’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 이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2)’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8.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3. 납입보험료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 (2)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
- (3)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이체할 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19.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20.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5조(보증준비금 산출) 및 [별표 24]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적립한다.

21. 기타

가. 통화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로 한다. 다만, '17.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중 '자. 초기투자자금' 과 '다. 특별계정의 폐지'에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한다.

나.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분기별로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지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한다.

라.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감액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를 감액한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5%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바.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사. 관련법규의 준용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아.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